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꿈나무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용어 변경(상호부금 -> 적립식 예금),

문구 수정(하나N뱅크 -> 스마트폰뱅킹)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꿈나무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“꿈나무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, 『적립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① (생략) ② 이 예금의 과목은 상호부금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 ~ 제 4 조 (생략)</p> <p>제 5 조 이자 ① ~ ⑤ (생략) ⑥ 이 예금은 다음 거래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(연 0.4%)의 우대금리를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. -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(연 0.2%) (재예치 시에는 미적용) - 가입기간 별로 일정 횟수 이상 납입 시 (연 0.2%) 우대 (재예치 시에도 적용) (1년: 10회, 13~18개월: 15회, 19~24개월: 20회, 25~30개월: 25회, 31~36개월: 30회) - 만기 자동재예치 시 (연 0.2%) -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N뱅크 가입 시 (연 0.2%)(재예치 시에는 미적용)</p> <p>제 6 조 ~ 제 7 조 (생략)</p>	<p>『꿈나무 적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“꿈나무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① (좌동) ② 이 예금의 과목은 적립식예금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 ~ 제 4 조 (좌동)</p> <p>제 5 조 이자 ① ~ ⑤ (좌동) ⑥ 이 예금은 다음 거래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(연 0.4%)의 우대금리를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. -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(연 0.2%) (재예치 시에는 미적용) - 가입기간 별로 일정 횟수 이상 납입 시 (연 0.2%) 우대 (재예치 시에도 적용) (1년: 10회, 13~18개월: 15회, 19~24개월: 20회, 25~30개월: 25회, 31~36개월: 30회) - 만기 자동재예치 시 (연 0.2%) -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스마트폰뱅킹 가입 시 (연 0.2%)(재예치 시에는 미적용)</p> <p>제 6 조 ~ 제 7 조 (좌동)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용어 변경</p> <p>문구 수정</p>